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73호
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서울특별시

1

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가락동 176번지 일대	40,749.2	2024. 4. 29.까지	-

○ 참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(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)으로부터 2년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.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4)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(☎02-2147-290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74호
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호(2009.01.0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96호(2010.08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7호(2011.07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74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7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0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3호(2013.09.2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73호(2016.06.2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9호(2016.11.1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0호(2017.05.2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60호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8호(2018.08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96호(2019.0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51호(2019.10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59호(2020.04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31호(2021.11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없음

명칭	유형	위치	면적(㎡)			지정목적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림 재정비촉진지구	주거지형	관악구 신림동 일원	491,163.6	-	491,163.6	•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되고,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·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
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

다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

라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: 변경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토지이용	면적(㎡)			비율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491,163.6	-	491,163.6	100.0	• 도로·하천 중복면적 338.1㎡
주택용지	277,778.0	-	277,778.0	56.6	-
상업업무용지	11,591.0	-	11,591.0	2.3	-